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7-244호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년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2017. 11.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 수립 배경	1
II . 제2차 종합계획 이행점검 결과	5
III . 제품안전관리 현황 및 당면과제	10
IV . 추진 목표 및 전략	19
V . 중점 추진과제	20
1. (생산·인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20
2. (수입·유통) 수입유통구조 다변화에 따른 시장감시 강화...	26
3. (사용·소비)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방지	32
4. (소통·역량) 제품안전관리 소통 및 역량 강화	36
VI . 향후 추진일정	40

1. 개요

- **계획명** : 제3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 **계획기간** : 2017 ~ 2019(매 3년마다 수립·시행)
- **법적근거** :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 **계획 범위**(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제2항)

1. 제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제품사고의 발생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수입된 제품 및 새로운 종류의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제품안전에 관한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7.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유체계에 관한 사항
8.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안전취약계층의 제품 사용에 따른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립절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기본계획안 수립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 → 제품안전정책협의회 협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통보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제출

□ **수립경과**

- 기초자료 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연구용역(17.4~8월)
- 관계부처 대상 종합계획 정책과제 수요조사 실시(6.5~6.16.)
- 제품안전혁신포럼(9.12.) 및 공청회(9.14.) 등을 통한 의견수렴
- 관계부처 협의 및 지자체 의견수렴(9.11.~9.22.)
- 제품안전실무협의회(10.18.) 및 정책협의회(11.1.) 협의

2.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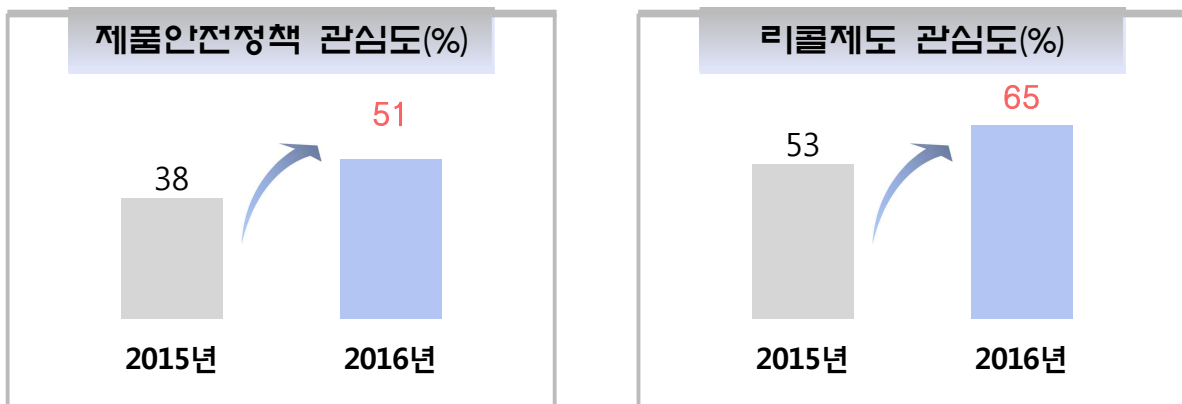
- 제품의 융복합화, 생산의 글로벌화, 유통채널의 다양화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자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안전관리 강화 추세
 - 국제적으로 제품 시장출시 전 기업의 자율 안전관리를 확대하는 대신 시장 모니터링, 제품리콜 및 국제적 공조 등 사후관리 강화 추세
 - * EU는 제품의 시장감시에 관한 규정(Regulation) 및 기존 일반제품안전지침 (General Product Safety Directive)을 새로운 규정(Regulation)으로 제정 중
 - 미국, EU, 일본 등은 제품안전관리 전략계획[참고1]을 통해 제품안전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제품안전정책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중

<미국 CPSC(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예산 및 인력 추이>

연도	2014	2015	2016	2017
예산(천불)	119,000	126,000	128,000	129,000
인력(명)	527	535	549	567

- 국내에서는 휴대폰 발화사고 및 서랍장 전도사고로 인한 리콜, 기저귀 위해성 논란 등을 계기로 제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
 - 전안법 개정 논란(17.1월) 등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중·소상공인 등의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 요구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일반국민 400명, 트렌드 리서치업)>



□ 4차 산업혁명시대, 초연결화, 초지능화, 초융합화 및 다품종소량화 등 새로운 제품환경 혁신에 따른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요구

○ IoT 기반의 복잡·다양한 스마트 제품이 급속히 보급됨에 따라 현행 제품 중심의 사전 안전관리제도*로는 소비자보호에 한계

* 안전관리품목을 지정하고 안전기준(제개정에 1~2년 소요) 적합함을 증명한 후 시장 출시

○ 인공지능 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 외에 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 증가

<제품안전관점에서의 4차 산업혁명>



□ 이러한 제품환경 변화 속에서 제품 위해·사고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망 구축 필요

○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전과정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품안전 정책역량 강화* 필요

* 국정과제 57-5번(공산품 유통, 생산, 사용 전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주관 부처 : 산업부, 협조부처 : 환경부, 관세청)

○ (기업) 안전책임 강화, (정부) 시장감시 기능 제고, (소비자) 안전 관리 참여 확대 등 정부-민간 간 역할 재정립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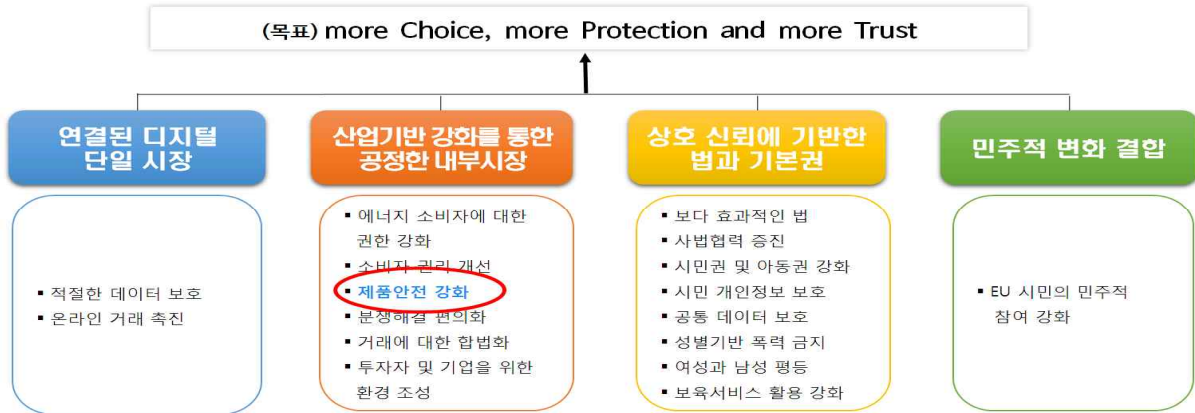
참고 1

주요국 제품안전관리 전략계획 개요

□ [미국] CPSC(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2016-2020 전략계획



□ [EU] DG JUSTICE AND CONSUMERS 2016-2020 전략계획



□ [일본] NITE(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장기비전 2030



1. 제2차 종합계획 개요

- '14.2월 수립된 「제2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에서는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사고 최소화를 위해 4대 전략 14대 중점과제 제기
- 기업의 “사회적책임 강화”라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동시에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
- 온라인 유통시장 발전 및 융·복합 신제품 출시 등 제품시장 변화에 대응한 선진형 안전관리제도 구축 추진

<제2차 종합계획의 정책방향,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시장감시체계 구축 ◇ 취약 품목 안전관리 강화 ◇ 기업의 자발적 안전 관리
-------	--

추진 전략	중점 추진과제
-------	---------

시장감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대 취약품목 선정 및 중점 관리 ② 리콜처분 확대 및 이행률 제고 ③ 온라인시장 감시 강화 ④ 사고정보 기반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	--

제품안전관리 제도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전인증 품목 단계적 완화 ②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③ 안전기준 제·개정 시스템 개선
---------------	--

제품안전 3개 법률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품 소관영역 명확화 ② 사업자의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의무화 ③ 온라인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④ 리콜 행정주체 재정립
---------------	---

소통·협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부·사업자·소비자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② 사업자·소비자의 안전의식 제고 ③ 국제협력 확대
----------	---

2. 중점과제별 이행점검 결과

□ 총 14개 중점과제에 대한 이행점검결과*, 이행완료 중점과제는 5개, 부분이행은 7개, 미이행은 2개임

* 전문가, 소비자 단체, 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통해 중점과제별 이행점검

□ 중점과제별 이행점검 결과

추진 전략	중점 과제	이행점검결과		비고
		이행 여부	이행내용	
1. 시장감시 강화	1-1. 20대 안전취약품목 선정 및 중점 관리	○	안전취약품목을 선정하고 매년 안전성조사(3~4회)	
	1-2. 리콜제도 개편 및 리콜이행률 제고			
	1-2-1. 자발적 개선조치 축소 및 리콜조치 확대	○	리콜(권고·명령)조치(건) : ('13)208 → ('16)355	
	1-2-2. 철저한 리콜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 강화	○	리콜이행점검팀 신설('16.2월)	
	1-2-3. 『제품안전심의위원회』 구성요건 법제화	×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에 근거한 '자문위원회' 유지	제품안전기본법령에 반영 검토
	1-2-4. 제품이력추적제도 구축 검토	×		이력추적제 구축 재검토
	1-3. 온라인시장 감시체계 강화			
	1-3-1. 온라인 유통제품 대상 안전성조사 강화	×		온라인 제품 안전성조사(수) : ('13)672 → ('16)398
	1-3-2. 소비자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	○	위해상품차단시스템 연계 매장(수) : ('13) 43,102 → ('16) 77,844	
	1-4. 사고정보 기반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	제품안전정보센터 설치 ('14.3월) 등	
2. 제품안전 관리제도 선진화	2-1. 사전인증 품목 단계적 완화			
	2-1-1. 공산품	△	예) 안전인증 공산품 : ('13)13종 → ('16)12종	
	2-1-2. 전기용품	△	예) 안전인증 전기용품 : ('13)46종 → ('16)39종	
	2-2.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2-2-1. 전기용품 포괄적 안전관리 시행	△		신제품 분류체계 및 기준 마련
2-2-2. 어린이용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14.6월) 등		

추진 전략	중점 과제	이행점검결과		비고
		이행 여부	이행내용	
	2-3. 안전기준 제·개정 시스템 개선	○	11개 분야 품목군 협의회 구성·운영	기준 제개정 기간 단축은 신중한 검토 필요 의견 수용
3. 제품안전 3개 법률 정비	3-1. 제품 소관영역 명확화	×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예정
	3-2. 사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화	○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외2 (사업자의 보고 의무) 신설(15.1월)	
	3-3. 온라인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 의무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제4항 등	
	3-4. 리콜 행정주체 재정립	×	* 현행 리콜 행정주체 : 불량제품(중앙/지자체), 불법제품(지자체)	불량제품 리콜 행정주체 일원화(중앙/지자체→중앙) 필요
4. 소통·협력 증진	4-1. 정부-사업자-소비자단체 간 협력 기반 구축			
	4-1-1. 유관기관 협력 확대	○	지자체, 소비자단체와 협업 네트워크 구축	
	4-1-2.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	제품안전정책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시행(17.9월)	
	4-1-3. 업종별 연락망 구축	○	제품안전협회에서 KC인증업체 리스트 관리	
	4-1-4. '홈닥터' 제도 시행	×		리콜처분 기업 애로 해소 필요
	4-1-5. '제품안전정책 포럼' 구성	○	매년 2차례 포럼 (워크숍, 총회) 개최	
	4-2. 사업자·소비자의 안전의식 제고			
	4-1-1. 홍보물 및 정책자료 제공	○	지상파 TV광고, 제품사고사례 영상 배포 등	
	4-1-2. 사업자 대상 '안전품질 경영' 점검 지원	×		제품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및 경영기법 개발 보급 필요
	4-1-3. 소비자 대상 안전주의 교육 실시	○	어린이·학부모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	
	4-3. 국제협력 확대			
	4-1-1. 협력채널 다양화 및 협력수준 제고	○	한중 소비자제품안전협력 MoU 체결(15.9월)	글로벌 협력 확대 필요
	4-1-2. 개도국 대상 국내 제품안전제도 전파	×		

3. 종합 평가

성과/계승 요소

□ 위해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강화

- 일부 안전취약품목을 선정하여 집중·반복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품목에서 부적합률이 감소
 - * 부적합률('15→'16) : LED 등기구(45%→31%), 직류전원장치(21%→8%) 등
- 「리콜이행점검팀」 신설('16.2월) 등을 통한 리콜이행 점검 및 보완명령 조치로 사업자의 제품안전 인식이 향상되어 자발적 리콜 증가
 - * 자발적 리콜(건) : ('13) 8 → ('14) 52 → ('15) 49 → ('16) 90
-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과의 연계된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여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 실효성 제고
 - * 연계 매장(수) : ('13) 43,102 → ('14) 50,354 → ('15) 63,723 → ('16) 77,844
- 제품안전정보센터를 설치('14.3월)하여 사고정보 기반 안전관리체계 구축

□ 제품 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15.1월)을 통해 사업자의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수입제품의 통관전 안전성조사 실시 근거 마련
 - * 사망사고, 전치 4주 이상의 사고, 화재 또는 폭발사고, 반복적인 사고 등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시행('15.6월)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 사용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
 - * '어린이제품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16.3월) → 신규 예산 확보('17, 9.5억)
-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간 안전인증 정기검사주기 일치(2년) 및 안전확인 유효기간(5년) 폐지로 시험부담 완화 등 안전규제 합리화('16.1월)

□ 제품안전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협업체계 마련

- 불법·불량제품 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협업 검사체계 구축
 - * 관세청·국표원·환경부·식약처 간 협업검사체계 협약식을 개최('15.9월)하고 관세청 주요 4개 세관(인천본부, 인천공항, 부산, 평택)에 협업사무소 운영
- 제품안전혁신포럼을 구성·운영('14.12월)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하고, 한중 소비자제품안전협력 MoU 체결('15.9월) 등 국제협력 강화

보완 요소

□ 리콜제도 및 시장 감시체계의 실효성 부족

- 리콜 불이행 기업에 대한 처벌 등 후속제제 수단이 미흡하고 자문위원회 근거(전안법 운용요령) 및 역할(자문 또는 심의) 정립 부족
- 온라인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건수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제품위해·사고정보 기반의 제품안전관리 세부절차* 확립도 미진
 - * 사고인지 → 결함확인(위해도 평가 등) → 리콜 결정 → 이행 모니터링

□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안전관리체계 개선 미흡

- 안전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객관적인 안전관리방법 분류체계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기준의 현실화 노력도 부족
- 비관리제품 및 융합 신제품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제품 소관영역 명확화 성과도 미흡

□ 제품안전 유관기관 및 업계 등과 실질적 협업체계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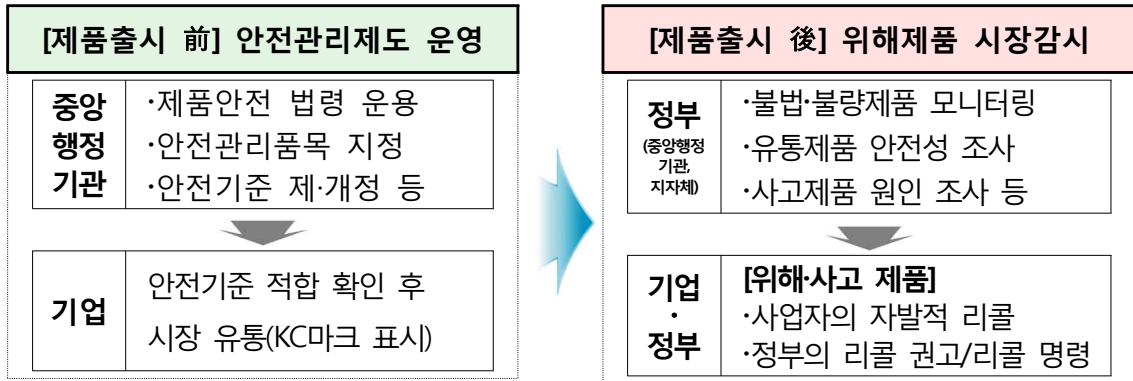
- 해외 주요국의 리콜정보 및 국내 소비자원의 제품사고정보 등을 공유하고 공동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미진
- 안전관리품목 관련 사업자와의 소통을 위한 창구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리콜처분 기업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방안도 부족

III

제품안전관리 현황 및 당면과제

1. 제품안전관리 현황

<제품출시 전·후 제품안전관리체계>



- (제품출시 前) 인증제도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대상 품목이 안전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출시하도록 관리 중

* 제품 위해도에 따라 3단계(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로 안전관리

안전인증(54종, 19%)	안전확인(110종, 38%)	공급자적합성확인(125종, 43%)	
높음 ←	(소비자의 위해도)	→ 낮음	
구 분	마크	대상품목(289) (생활/전기/어린이)	적 용 절 차
① 안전인증		54종(11/39/4)	제품시험(인증기관) + 공장심사 → 인증 → 판매
② 안전확인		110종(30/63/17)	제품시험(시험검사기관) → 신고 → 판매
③ 공급자 적합성 확인		125종(39/71/15)	제품시험(기업 스스로) → 판매

- (제품출시 後) 정부의 불법·불량제품 모니터링, 안전성 조사, 사고 제품 원인조사 등을 통해 위해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등



참고 2

제품안전 관련법 변천사

시기	기본법 · 특별법	생활용품(공산품)	전기용품
'67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정) [공산품 품질관리(QC) 강화] ○ 공산품 품질표시 및 검사제 실시 ○ 공산품 품질관리등급제 시행	
'73		(일부개정) [사전·사후검사 제도 도입] ○ 품질검사대상을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로 분리하여 실시	
'74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정) [전기용품 형식승인제도 도입] ○ 정부주도의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형식승인제도 시행
'93		품질경영 촉진법 (전부개정) [품질경영(QM) 체제 도입] ○ 안전검사 강화(품질검사제를 안전검사제로 변경)	
'99		(일부개정) [자율적 품질표시제도 도입] ○ 품질표시 의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품질표시제도로 전환	(전부개정) [안전인증제도 도입] ○ 정부주도의 형식승인제도가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안전인증제도로 전환 ○ 제조자 자율적으로 안정성을 인증하는 임의인증제도 도입 ○ 국제기준을 안전기준으로 도입
'00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안전검사 축소, 임의제 확대] ○ 법령명 변경 및 품질표시 제도를 '권고제도'로 재실시 ○ 규제개혁 차원에서 안전검사 의무규정을 축소하고, 임의 제도인 안전검정 및 품질표시 제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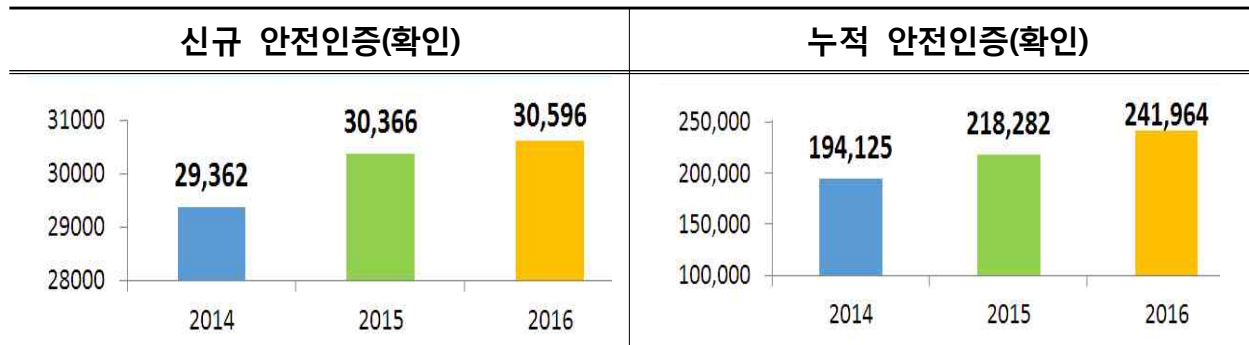
시기	기본법 · 특별법	생활용품(공산품)	전기용품
'04		(일부개정)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화] ○ 어린이 보호포장제도 도입	
'05		(전부개정) [자율안전확인제도 도입]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 품질표시(의무) 제도 신설 ○ 법적 지정 외 품목에 대한 신속조치제도 신설 ○ 공산품안전관리종합계획 도입	(일부개정) [수입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 수입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제도 도입
'07			(전부개정) [민간자율 안전관리제도 도입] ○ 자율안전 확인제도 도입 ○ 대여업자 법적용 근거 신설
'08		(각 법령의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가통합인증마크 KC 도입]	
'09			(일부개정) [민간자율 안전관리 확대] ○ 제조자 시험결과 인정제도 도입 ○ 공급자적합성 확인제도 도입
'10	제품안전기본법 (제정) [통일된 제품안전 정책 제시] ○ 제품안전종합계획 수립 ○ 제품사고조사제도 도입 ○ 안전성 조사 및 리콜제도 시행 ○ 한국제품안전협회 설립		
'11		(일부개정) [안전관리체계 보완] ○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완화 (1회/1년 → 1회/2년) ○ 국내외 시험 검사성적서 상호 인정 근거 마련	
'12	(일부개정) [자발적리콜 등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 보고의무] ○ 해외에서 리콜조치를 받거나,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는 등의 경우 사업자는 중앙행정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	(일부개정)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강화] ○ 물티슈, 접착제, 생활화학가정 용품의 제조·수입 시 성분 목록, 각 성분별 안전성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화	(일부개정) [산업부·미래부 규제 분리] ○ 산업부는 전기안전 규제, 미래부는 전자파 규제 담당 ○ 품목별 안전관리 담당에서 규제별 안전관리로 전환

시기	기본법 · 특별법	생활용품(공산품)	전기용품
'13			(일부개정) [자율안전확인 -> 안전확인] ○ 자율안전확인제도에서 안전확인제도로 용어 변경 ○ 안전확인 시험기관 지정제 도입
'14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정) ○ 만 13세 이하 모든 어린이 제품을 안전관리대상으로 포함(타법의 소관 품목 제외) ○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 제도 운영		
'15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안전성 조사 공표 및 사고보고 의무화] ○ 안전성조사결과 공표 가능 ○ 중대한 제품 결함여부와 관계 없이 사망 등의 제품 사고시 사업자 보고 의무화 ○ 수입 통관전 안전성 조사 실시 ○ 인증제품의 부품변경 시 벌칙 강화		
'1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면 개정 ○ 관리단계(인증, 확인, 공급자), 정기검사주기, 벌칙규정 등 통일	
'1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제품안전 정책협의회 설치] ○ 제품안전 정책협의 및 非관리 제품 소관부처 조정 기능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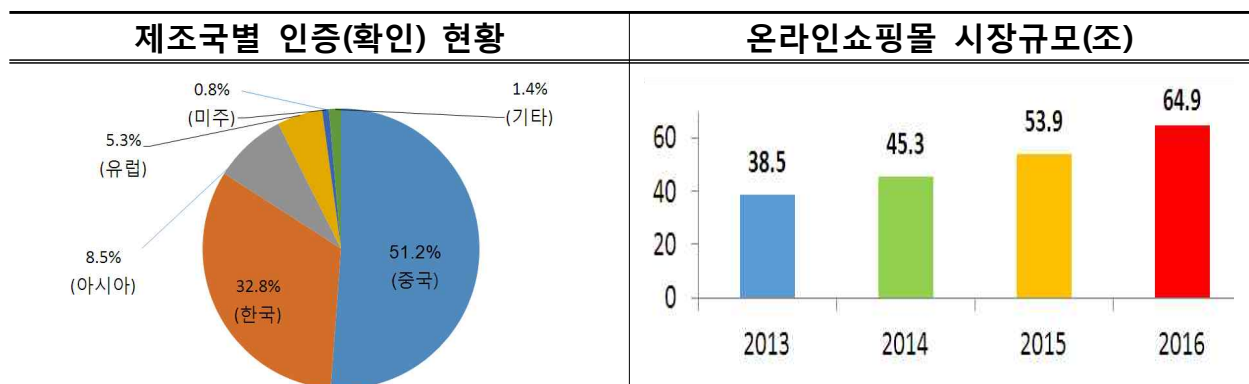
2. 제품안전관리 동향 및 당면과제

- (생산·인증) 융복합화 및 기술진보 등으로 제품안전관리 영역 확대
 - 제품시장 다변화에 따라 안전관리품목에 대한 신규 및 누적 안전인증(확인) 등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신규 및 누적 안전인증(확인) 등록 건수>



- 안전관리품목 이외에 비관리제품(요가매트, 휴대폰케이스 등) 및 융복합 신제품(드론, 스피너 등) 등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 증가
- (수입·유통) 온라인·오프라인 및 구매대행 등 제품 유통시장이 다양화
 - 수입되는 안전인증(확인) 제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 안전인증(확인) 수입제품(천건) : ('13) 107 → ('14) 120 → ('15) 137 → ('16) 154
 - 구매대행 등 온라인 유통채널 다양화 및 온라인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온라인 유통제품에 대한 감시 강화 필요
 - * 온라인쇼핑몰 시장규모(조) : ('13)38.5 → ('14)45.3 → ('15)53.9 → ('16)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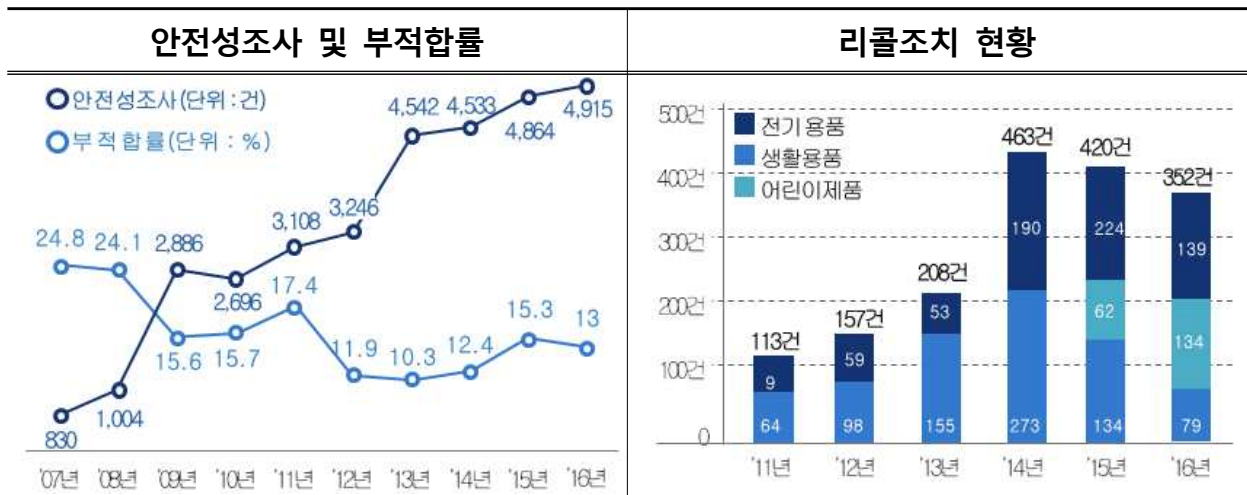


□ (사용·소비) 소비자 제품위해·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

- 국내외 제품 위해·사고 정보가 적시에 수집·분석되고 제품 위해·사고 시 조사·분석 및 위해성 평가 등 대응체계 확립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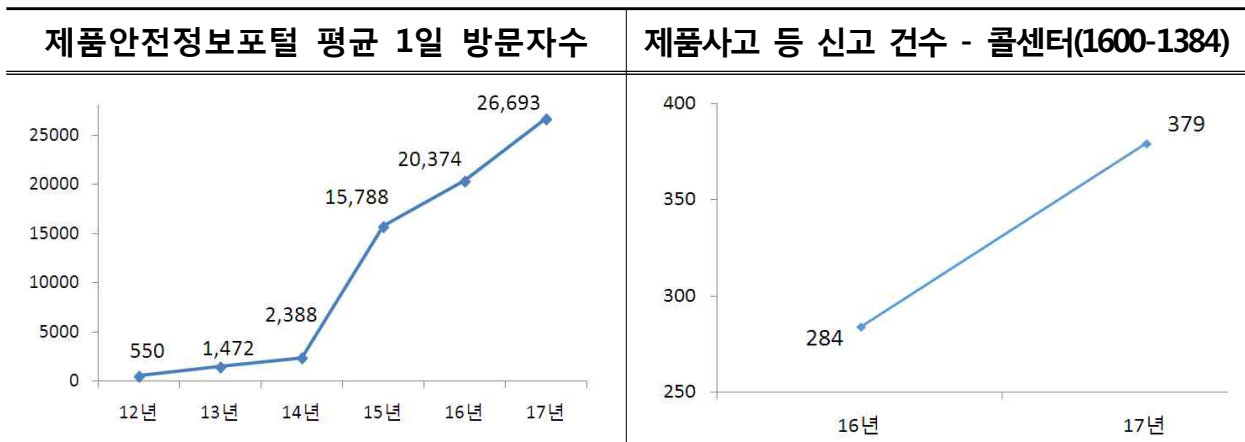
* 사고건수(소비자원):('13)25,357→('14)29,474→('15)26,191→('16)22,028(평균 25,760)

- 리콜제품에 대한 리콜이행 점검 → 리콜제품 회수율 제고 → 리콜제품 차단 등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리콜조치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소통·역량) 제품의 소과정 안전관리를 위한 소통·역량 취약

- 제품 위해·사고에 대한 소비자 등의 관심은 증가에 따라 위해·사고원인분석 등에 대한 정부 대응역량 및 부처 간 협업 강화 필요
- 제품 생산과 유통의 글로벌화가 심화됨에 따라 위해·사고제품에 대한 사고·결함 정보교환, 동시 리콜 등 국제 협업 강화 필요



3. 해외 주요국 안전관리정책 동향

□ 위해성평가에 기반을 둔 제품안전관리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위해제품 선별하기 위한 위해성평가시스템(RAM)을 운영
 - * RAM(Risk Assessment Methodology) : 위해 평가 알고리즘을 사용한 IT시스템
- (EU) 위해성평가 가이드라인 RAG*를 운영하여 매주 각 회원국으로부터 조사된 위해제품에 대한 정보를 발표
 - * RAG(Risk Assessment Guideline) : 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부상 심각도와 확률의 조합으로 리스크를 결정하는 위해성평가 가이드라인
- (일본) 1974년부터 시행된 사고정보수집 제도를 기반으로 '(재)일본 과학기술연맹'의 R-MAP* 모형을 통한 제품의 위해성 식별
 - * R-MAP : 위해 발생빈도와 위해의 정도를 모형에 대입하여 위해성 결정

□ 글로벌 유통망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제품 감시 강화

- (미국) CPSC는 수입제품에 대하여 RAM시스템을 활용한 위해 제품 사전차단 및 추적라벨표시* 정책(어린이제품) 시행
 - * Tracking Label 요건 : 제조자명, 제품의 위치 및 날짜 등 출처확인 정보
 - * 법적 근거 적용 : 소비자제품안전법,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시행
- (EU) 어린이제품 등의 주요생산국*인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RAPEX-CHINA'시스템**을 운영
 - * 유럽 시장의 모든 완구 중 약 85%가 중국산으로 중국제품 추적이 필수
 - ** RAPEX 정보가 중국 AQSIQ(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에 제공되어 중국이 직접 제품에 대한 추적 실시

□ 제품 사고 · 피해정보 관련 소통 강화

- (미국) 정보보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CPSC의 브랜드화' 전략을 추진하고 소셜미디어 및 'NSN*'등을 통한 정보의 적시성 강화
 - * NSN(Neighborhood Safety Network) : 노인, 저소득 가정 등 정보 취득에 취약한 소비자를 위한 무료 온라인 서비스(교육 포스터 및 정보메시지 제공 등)
- (일본) '사고정보데이터뱅크' 및 '소비자청리콜정보' 등 온라인 시스템과 지역네트워크* 등을 통한 신속한 정보 제공
 - * 지역별(소비자 행정 블록) 공공단체 및 기관과 연계한 정보공유 체계
- (EU) RAPEX를 통한 신속 경보 시스템과 ICSMS*를 통한 규정 비준수제품의 시장감시 활동 및 사례정보 제공
 - * ICSMS(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for the pan-European Market Surveillance) : 비준수 제품에 대한 정보, 정부간의 공동행동 및 모범사례 등을 교환하는 IT시스템

□ 국내 · 외 제품안전관리 협력 강화

- (EU) 2년마다 제품안전 이해관계자를 위한 IPSW* 행사 개최 및 위해제품 추적을 위한 EU-미국-중국 3국간 협력 강화
 - * IPSW(International Products Safety Week) : 제품안전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국제 워크숍
- (미국) CPSC는 연간 기관 차원의 이해관계자* '공동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협업활동을 공식화하기 위한 보고체계 및 시스템 개발
 - * 주 및 지방 정부, 연방 기관, 외국 규제당국, 안전 관련단체 및 기타 다양한 비영리단체
- (일본) 긴급한 사고 발생시 절차*에 따라 각 정부가 합일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상호 충분한 협력 도모
 - * 「소비자 안전확보에 관한 관계부처 긴급 대응 기본 요강」(각 부처 장관 합의)

4. 시사점

□ 생산 및 인증 단계

- ◆ 비관리제품 및 융복합 신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 기술변화에 따른 현행 안전관리 품목/기준 정비
- ◆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과 책임 부여

□ 수입 및 유통 단계

- ◆ 통관단계에서의 부처협업을 통한 수입제품 안전관리 효과성 향상
- ◆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시장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의 불법·불량제품 감시 강화

□ 사용 및 소비 단계

- ◆ 국내외 제품 위해·사고 정보의 실시간 수집·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등 수요자 맞춤형 제품안전 정보 제공
- ◆ 위해·사고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한 리콜제도의 실효성 제고

□ 소통 및 역량 관련

- ◆ 제품 쏠과정 안전관리체계가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책 기관의 역량 강화 및 對국민 제품안전 교육·홍보 강화
- ◆ 제품 생산·유통의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 협업체계 구축

IV

추진 목표 및 전략



1 (생산·인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 ◆ 비관리제품 및 용·복합 신제품에 대한 범정부 안전관리체계 확립
- ◆ 안전관리품목 및 안전기준을 전면조사하여 정비
- ◆ 제품안전경영체계 보급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책임 강화

1-1 비관리제품 및 용·복합 신제품 안전관리

【 시중 유통 비관리제품 등의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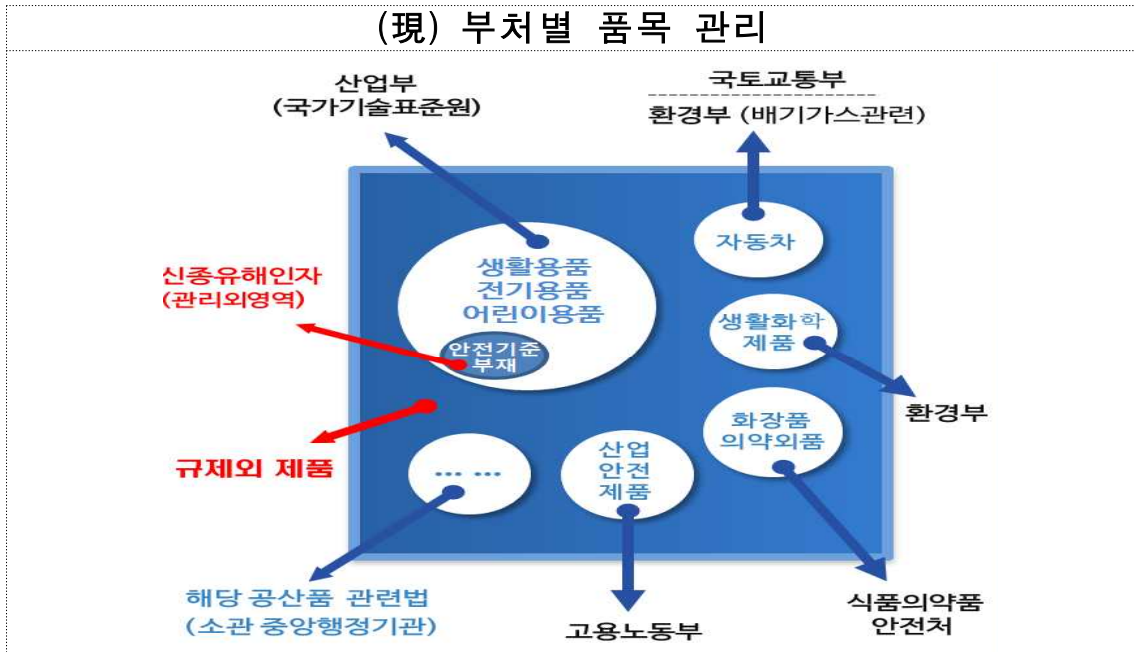
▷ 현행 비관리제품 및 용·복합 신제품의 경우 일부 품목은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나 소관부처가 불명확하여 사각지대로 존재

* 대형 유통매장(이마트)의 43만여건의 등록 제품 전수조사 결과('17.1월, 제품안전협회), 비관리제품이 2.2만여건(5.2%)임

- 시중 유통 비관리제품 및 용·복합 신제품의 분류·관리
 - (유통제품) 대형 유통매장내(이마트) 소비자제품에 대한 조사결과('17.1월)를 바탕으로 비관리제품을 발굴하여 품목으로 분류
 - (용·복합 신제품) 소비자 위해·사고 요소를 내포한 용·복합 신제품은 관심품목으로 분류·관리
- 비관리품목 및 신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소관부처 명확화
 - (비관리품목) 각 부처의 관리품목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중 유통 비관리품목에 대한 소관부처를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지정
 -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국무회의, '16.11.29)'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17.3)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17.9월~)
 - (신제품) 소관부처가 모호한 새로운 위해제품 발견시 부처 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소관부처 결정

< 범정부 안전관리체계 구축(안) >

(現) 부처별 품목 관리



(新) 품목군별 소관부처 지정·관리(제품안전정책협의회)



□ 비관리제품 및 융·복합 신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을 주기적(연 1회 이상)으로 조사하여 비관리 품목 및 신규 출시되는 융·복합 제품의 실태 파악('18)
- 조사된 비관리품목 및 융복합 신제품은 소관부처를 지정하여 위해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시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 관리('18)
- 융·복합 위해요소의 경우 관련 부처 간 협업 대응

참고

대형 유통매장내 소비자제품 전수조사 결과('17.1월)

□ 총괄

- 대형 유통매장(이마트) 소비자제품 유통현황 조사('17.1월, 제품안전협회)
 -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등 7개 부처 소관 품목 43만건 제품
 - 산업부 소관(생활용품/전기용품/어린이제품) 제품이 85.2%

□ 부처별 현황

종류	부처	제품종류	소관법령	주요품	제품수	비중
관리 대상	산업부	생활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의류, 가구	239,881	85.2%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완구, 유아용제품	112,852	
		전기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조명기구, 충전기	14,695	
		가스류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가스난로, 부탄가스	10	
		계량기기	계량법	저울	99	
	식약처	화장품	화장품법	화장품 삼푸, 물티슈	21,332	7.5%
		식품용기	식품위생법	식기, 후라이팬	10,274	
		의약외품	약사법	생리대, 마스크	861	
		위생용품 ('18.4월 시행)	위생용품관리법	냅킨, 일회용젓가락	198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체온계, 혈압계	28	
	과기정통부	정보기기	전파법	메모리, 키보드	5,415	1.3%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방향제, 세탁세제	3,281	0.8%
	농림부	비료류	비료관리법	영양제, 비료	23	0.0%
	노동부	산업안전제품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용 보호구	17	0.0%
	행안부	소방기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화기	9	0.0%
소 계					408,975	94.8%
비관리 대상					22,249	5.2%
총 계					431,224	100%

1-2 안전관리품목 및 안전기준 정비

【 안전관리품목 및 안전기준 운영현황 】

- ▷ (품목) 위해도에 따라 3단계(안전인증/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로 분류·관리하고 있으나, 객관적 근거가 미흡하고 주기적인 검토 필요
 - * (예)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용품 관리품목('17.10) : 173/80/36종(총 289종)
- ▷ (기준) 기술변화, 국제표준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인 제개정 필요
 - * (예)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용품 안전기준('17.10) : 695/80/37개(총 812개)

□ 現 안전관리품목의 안전관리방법(3단계) 전면 검토 후 조정

- (위해도 평가) 안전관리품목에 대한 소비자 위해·사고 건수, 안전성 조사 부적합률 등을 기반으로 한 정량적 위해도 평가기법 개발('18)
 - * 해외 위해도 평가기법(예-(일본)R-Map Risk Matrix)을 벤치마킹하고 소비자원, 경찰청 등의 제품 위해·사고 사례 등을 활용하여 개발
- (품목 조정) 개발된 위해도 평가기법을 통해 안전관리대상 품목을 전면 조정('19)하고, 이후 5년마다 품목별 안전관리방법 검토·조정
 -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근거 마련('19)

□ 안전기준을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제·개정 절차를 체계화

- (기준 정비) 현행 안전기준을 전수조사하여 기술변화, 업계현황, 국제표준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기준을 정비('18~'20)
 - 국제표준 적부확인 절차를 준용하여 5년마다 개정·확인 절차 마련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의 개정을 통해 안전기준 적부확인 근거 마련('19)
- (제개정 절차) 현행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간 상이한 안전기준 제·개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일원화('17.12월)
 - 안전기준(안) 심의 등을 담당하는 제품안전심의위 및 분야별 전문위 정비



1-3 기업의 자율 안전관리 확산

【 안전관리대상 품목수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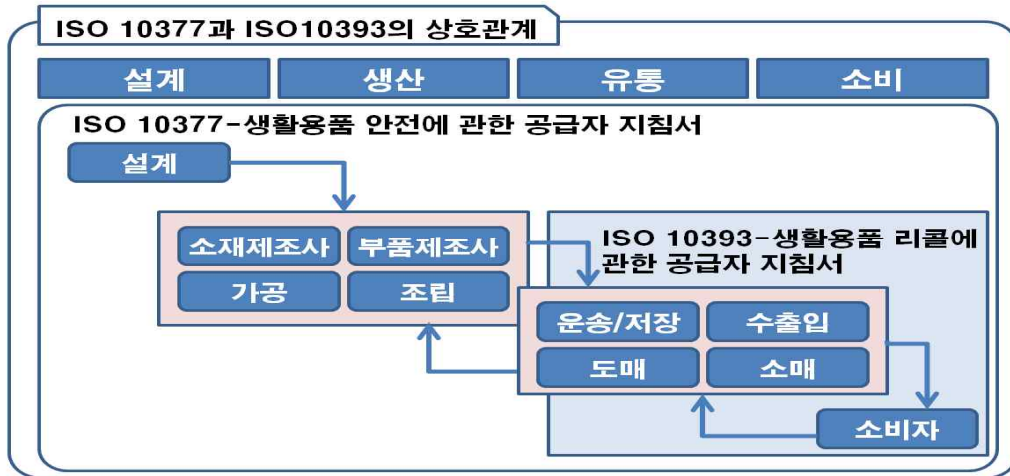
▷ 제품 다변화로 안전관리대상 품목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통한 제품 안전관리 필요성 증가

* 안전관리대상 품목수 : ('01) 167 → ('10) 232 → ('16) 289

□ 제품안전경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기술컨설팅 제공

○ (안전경영)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리스크 평가 및 공급망 관리 등 제품안전경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소기업 등에 보급('18~)

* 국제표준 ISO 10377 및 ISO 10393 등을 참조해서 개발 추진



○ (컨설팅) 사고·위해 등으로 리콜조치된 제품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중소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18~)

*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제품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

□ 공통 안전기준을 개발·보급하고 안전관리지침서 등 제작·배포

○ (공통기준) 모든 제품에 대해 기업의 자율과 책임하에 안전관리 되도록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공통 안전기준을 개발·보급('18~)

* 제품군별 또는 감전, 유해물질 등 안전요소별 공통 안전기준 제정 검토

○ (안전관리지침서) 사업자가 제품의 결함, 사고 또는 위해 사실을 인지할 경우 준수해야 할 안전의무 지침서* 제작·배포('18~)

* 제품결함·사고 보고에서 리콜조치 종료까지의 세부 이행 절차

1-4 안전관리체계 신설 및 소프트웨어(SW) 안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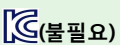
【 중 · 소상공인 및 SW 안전관리 현황 】

- ▷ (중 · 소상공인) 중 · 소상공인 이행역량에 비해 과도한 사전 안전 규제는 그 준수가 어려워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효과 낮음
 - * 동대문·남대문 시장의 가정용 섬유제품 87%가 KC 미표시('14, 제품안전협회)
- ▷ (소프트웨어) ICT와 제품 간 융합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 중 · 소상공인도 이행가능한 안전규제 설정

- (안전관리방법 신설) 위해도가 낮은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공급자적합성확인' → (신설) '안전기준준수*' 대상으로 전환

* 제품시험 및 KC 표시가 의무사항(공급자적합성확인) → KC 표시규정 없음(안전기준준수)

<현행 안전관리방법>				<개선방안>			
구분	안전인증 (생활용품 : 11종)	안전확인 (30종)	공급자 적합성확인 (39종)	안전 인증 (11종)	안전 확인 (30종)	공급자 적합성확인 (39종)	안전기준 준수(가칭)
사전 의무	제품시험(시험 기관)+공장심사	제품시험 (시험기관)	제품시험 (기업 스스로)	좌동	좌동	좌동	 (불필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및 대상품목 선정('17.12월)

□ 지능형 제품 소프트웨어(SW)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 (SW 안전기준) IoT,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제품의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능형 SW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준 마련('19)

* 사용자의 실수, 제품이나 SW의 고장이 발생해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품 및 SW의 설계 및 개발 시 안전기능 평가

- (SW 인증제 도입)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안전 관리대상을 제품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확대 검토('19)

2

(수입·유통) 수입·유통구조 다변화에 따른 시장감시 강화

- ◆ 수입 및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불법·불량제품 차단
- ◆ 시장·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안전성조사 강화
- ◆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 등 유통단계 안전규제 합리화

2-1 수입 위해제품 차단

【 수입 불법·불량제품 현황 】

▷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외국 수입물품의 반입 증가*에 따라 불법·불량 수입제품도 증가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위협

* 전자상거래 물량(만건) : ('06) 109 → ('10) 331 → ('14) 1,553 → ('16) 1,739

▷ 시중 유통 불법·불량제품 중 수입제품이 차지하는 비율* 증가 추세

* 단속현황(건, 수입%) : ('14) 985 (37.8%) → ('15) 1,140 (47.6%) → ('16) 1,286 (54.7%)

□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한 수입물품 안전성 검사 강화

○ (부처 협업)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산업부·환경부 등 6개 부처* 간 안전관리 협업검사체계 강화('18~)

* 산업부(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환경부(화학물질), 고용부(석면 함유제품), 과기정통부(전파법 대상물품), 식약처(식품류), 산림청(목재펠릿, 성형탄)

- 통관단계에서의 협업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물품 관련 부처의 세관 파견 인력 확대 검토

○ (통관 검사) 통관단계에서 수입물품 안전성 협업검사 확대로 불법제품 수입과 유해성분 함유된 물품의 차단 강화 추진('18~)

- 해외 리콜제품 등 소비자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이 아니라도 협업검사 실시

* 통관단계 불법·불량제품 적발(건) : ('14) 67 → ('15) 2,014 → ('16) 9,921

< 통관단계에서의 부처 간 협업검사 체계 >



□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에 대한 수입 요건확인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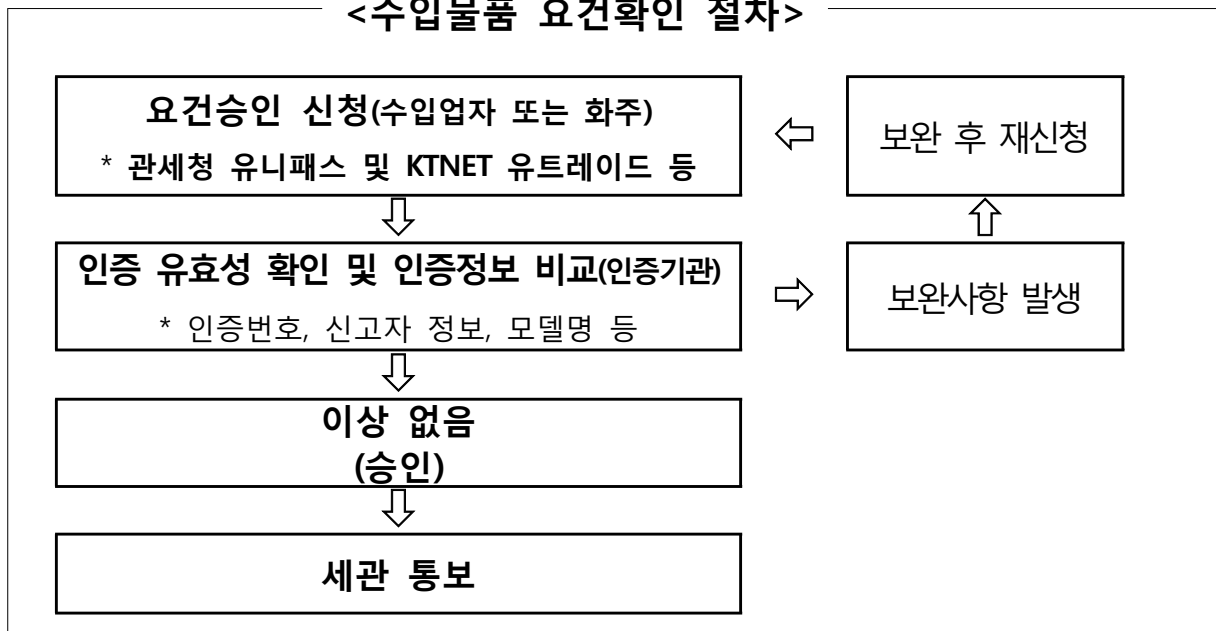
- (요건확인) 국민건강,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물품은 세관장이 통관 단계에서 관련법령에 따른 수입 요건 구비 여부 확인 강화('18~)

*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 HSK 10단위 12,232개중 5,720개 지정(46.8%)

- (실효성 제고) 수입현황을 고려하여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을 정비 하고 수입제품의 안전인증 등의 요건확인 절차의 실효성 제고*('18~)

* 다른 제품 인증정보로 승인받는 사례 방지를 위해 요건신청시 수입물품 사진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 신청물품과 실제 수입물품의 동일여부 확인

<수입물품 요건확인 절차>



2-2 생활밀착 수시 안전성조사 확대

【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현황 】

▷ 매년 시장감시의 일환으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으나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높은 않은 상황

* (예시) 전기·생활·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개) : ('14) 4,533→('15) 4,864→('16) 4,915

□ 수요자 중심의 안전성조사를 위한 협업 시스템 구축

○ (소비자)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 참여형 안전성조사 공모제*」 도입·운영('18)

* 제품안전정보포털에 소비자 안전성조사요청 게시판을 운영하고, 반기별로 「제품안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조사여부 결정(필요시 조사 즉시 실시)

○ (유관기관) 제품안전관리원(가칭), 시험·인증기관 등 유관기관과 안전성조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19)

* 안전성조사, 사고조사 및 불량·불법제품조사 결과 등을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

□ 시장 중심의 정기·수시 안전성조사 강화

○ (정기조사) 다양한 위해정보(부적합률, 민원, 불법불량단속 등)를 기반으로 「30대 안전취약제품*」을 선정하여 집중·반복 조사 실시('17~)

* 매년 연초 취약제품을 선정하고 당해년도 안전성조사 계획과 같이 발표(사전예고)

○ (수시조사) 국민소통 채널(SNS, 블로그, 포탈검색, 언론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우려제품 등에 대한 수시 안전성조사 확대('17~)

* 유사품목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 병행 실시(제품안전모니터링사업과 연계)

○ (공동기획조사) 사후 안전관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사 품목별 특성에 따라 유관기관과 공동조사 실시 확대('17~)

* 예) 품목(교육부(교복), 환경부(어린이제품)) & 특성(소비자원(품질), 지자체(합동단속))

2-3 불법·불량제품 시중 유통 차단

【 시중 유통 불법·불량제품 차단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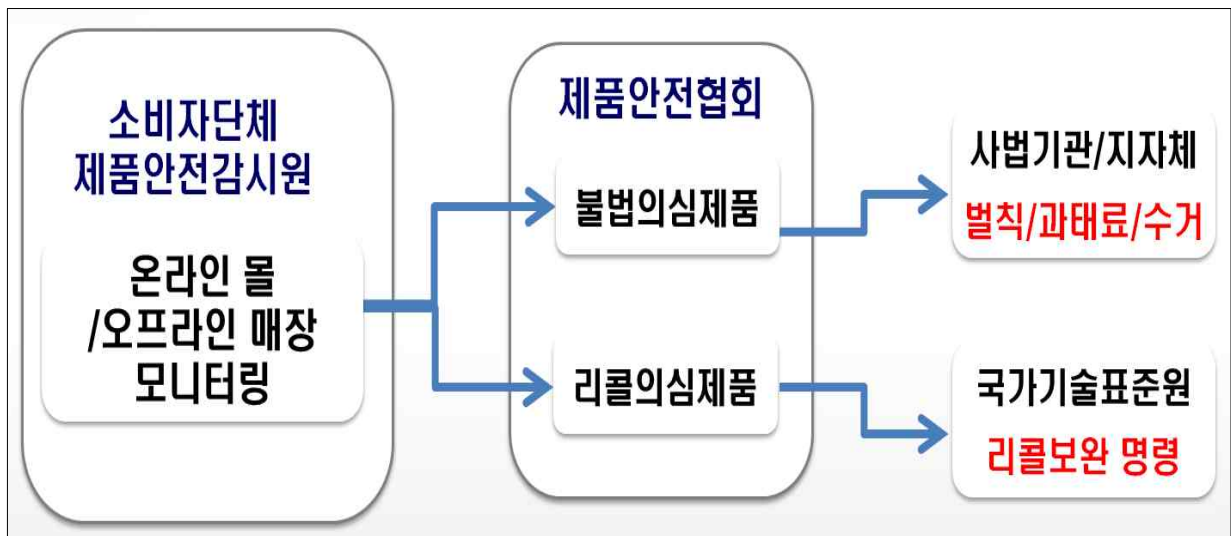
-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구축('09), 대형유통사 중심으로 연계 운영
 - 리콜제품 중 바코드 정보 없는 제품(약 80%)은 모델명, 제조사명 등 제품정보를 수작업으로 입력하여 판매 차단

* 리콜제품 등 위해상품 정보를 등록하면 유통매장에서 실시간 차단하는 시스템

□ 시중 유통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강화

- (소비자단체) 위해제품의 시중유통 방지를 위해 소비자단체 제품 안전감시원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감시 강화('18)
 - 재래시장, 소규모 문구점 등 안전취약지대 감시활동 집중

<온·오프라인 시장 모니터링 결과 처리 절차>



- (지자체)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불법·불량제품 근절을 위해 필요한 노하우를 공유·소통하고, 합동단속 실시('18)
 - * 매년 1회 이상 지자체, 제품안전협회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 합동단속 실시 및 민원에 따른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리콜 등 행정처분 결과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 제고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효율화

- (시스템 확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연계하는 온라인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여 위해제품 유통 차단의 효과성 제고

* 온라인 : ('16)13개 → ('19)23개 / 오프라인 : ('16) 77,844개 → ('19) 110,000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개념도>



- (바코드 부착) 위해제품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위해도가 높은 안전취약계층 제품 등을 대상으로 바코드 부착 제도 도입 검토

* 바코드 부착 제도 도입 관련 용역사업('18) → 위해도가 높은 일부 어린이 제품에 대해 바코드 부착 시범사업('19) 실시

<최근 리콜제품 중 바코드 보유제품 비율>

품목	2015 (해당/전체개수)	2016 (해당/전체개수)	2017 上 (해당/전체개수)	총계 (해당/전체개수)
전기용품	20/297 (7%)	23/230 (10%)	13/88 (15%)	56/615 (9%)
생활용품	23/100 (23%)	33/111 (30%)	3/11 (27%)	59/222 (27%)
어린이제품	32/166 (19%)	47/108 (44%)	43/72 (60%)	122/346 (35%)
합계	75/563 (13%)	103/449 (23%)	59/171 (35%)	237/1183 (20%)

2-4 유통단계 안전규제 합리화

【 유통단계 안전규제 현황 】

- ▷ (구매대행) KC마크 표시 없는 제품에 대해 구매대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되는 유통구조에서 실효성 없음
 - * 소비자의 요청에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는 구매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병행수입) 일반 수입제품과 동일한 안전규제 적용

□ 소비자 위해도가 낮은 제품에 대해 구매대행 허용

- (위해도 낮은 품목)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매대행을 허용하되 대체 의무* 부과
 - * 구매대행 유통 제품 고지, 안전관리대상 여부, 위해/위해우려 제품의 구매대행 중지 등
- (위해도 높은 품목) 위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후 KC마크를 표시한 제품만 구매대행 허용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17)

<현행 KC 없는 제품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	
	안전관리방법	전기용품/생활용품	전기용품	생활용품
高 위 해 도 低	① 안전인증	구매대행 금지	금지*	금지
	② 안전확인		금지	허용
	③ 공급자적합성확인		허용	허용

* 금지 제품 중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을 통해 구매대행 허용

□ 동일모델 확인 및 사전규제 개선을 통한 병행수입 부담 완화

- (동일모델 확인) 안전성이 확인된 선행 수입제품이 있는 경우 동일 모델 확인 후 통관시키되, 관련 정보 표시 의무* 부과
 - * 제품에 병행수입제품이고 안전관리대상 제품임을 표시하고 인터넷상 고지 등
- (사전규제 개선) 주요 병행수입 품목을 '공급자적합성확인' → (신설) '안전기준준수' 대상으로 전환하여 사전규제 완화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17)

3

(사용·소비)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방지

- ◆ 국내외 제품 위해·사고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제공
- ◆ 제품 위해·사고 조사·분석 체계 확립을 통해 재발 방지
- ◆ 리콜조치, 리콜 이행점검, 리콜제품 회수 등 리콜체계 전면 개편

3-1 제품위해·사고 정보체계 개선

【 제품 위해·사고 정보연계 현황 】

- ▷ 기관별로 제품 위해·사고 정보 수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협력체계는 구축되지 않은 상황

* 제품안전정보포털(국표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소비자원) 등

□ 제품 사고·위해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 (시스템 연계) 국표원 제품안전정보포털과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CISS*)을 연계하여 제품 위해·사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
 - 제품 위해·사고 정보 연계관리 근거 마련(제품안전기본법 개정 '18)
-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가 각종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체 상해 및 사망 사례 등을 수집·분석
- (국내외 정보 수집) 국내외 뉴스·SNS·블로거 등의 제품사고정보, 주요국의 제품위해 및 리콜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18)

□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 (인증정보) 소비자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 안전관리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단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19)
 - 제품안전관리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 위한 앱(App) 개발·보급
- (리콜정보) 체계적인 리콜정보 관리 및 소비자의 리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공정위 운영) 고도화('17)

3-2 제품위해·사고 조사·분석체계 확립

【 제품 위해·사고 조사 현황 】

▷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증가로 제품 위해·사고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체계는 미흡

* 제품 위해·사고 신고 건수 : ('15) 69건 → ('16) 96건

□ 체계적인 제품위해·사고 조사절차 마련

- (사고조사 절차) 수집된 제품위해·사고 정보를 조사하여 안전성 조사 또는 위해성평가 등 후속조치 결정 절차 및 방법 확립
 - 사고제품 외에 동일한 제품군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신설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18)
- (소비자 경고 발령)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는 리콜결정 전에 사용주의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경고 발령(제품안전기본법 개정 '18)

□ 제품위해·사고 원인 분석 및 후속조치

- (사고분석) 제품위해·사고 원인을 신속히 조사·분석하여 안전성 제고 기술 보급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사고재발 방지('19 ~)
 - R&D를 통해 안전기술 개발·보급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 하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안전기준 개정 추진
- (조사체계) 증가하는 제품위해·사고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조사 주체를 이원화하는 등의 사고조사체계 개편방안 마련('19 ~)
 - 국표원은 다수 및 반복 위해·사고 등에 대해 조사·분석을 담당 하고 제품안전관리원은 일반 위해·사고 등을 담당

3-3 리콜조치 및 이행점검 절차 정립

【 리콜조치 및 이행점검 현황 】

▷ 갤럭시7 리콜 등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업의 자발적 리콜 활성화 및 리콜이행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필요

* 위해제품에 대한 리콜조치 세부절차 및 리콜이행점검 근거 미비 등

□ 위해제품에 대한 리콜조치 효율화(제품안전기본법 개정 '18)

○ (리콜조치 개선) 기업의 자발적 리콜을 활성화하고, 리콜조치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세부절차와 방법 마련('17.10월)

- 리콜제품의 위해원인· 위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방안 마련

* 위해성 등급을 부여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 실시('18)

○ (자문위원회) 리콜조치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법령에 의한 '심의위원회'로 격상하고, 리콜조치 심의 등의 역할 명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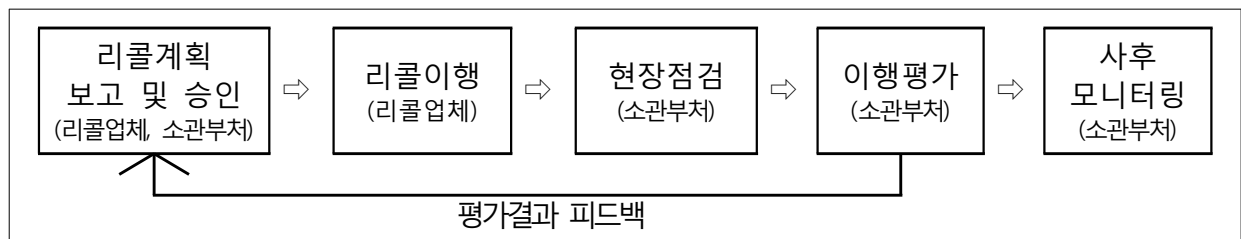
*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제30조(자문범위) 등에 근거

□ 리콜이행 점검 강화(제품안전기본법 개정 '18)

○ (이행점검) 「제품안전기본법」에 리콜이행점검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효율적인 리콜조치를 위한 리콜이행점검 세부절차 개선('18)

- 리콜이행점검, 리콜 보완명령에 대한 근거 조항을 규정하고 리콜 보완명령 불이행 및 허위보고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 리콜이행점검 세부절차 개선방안 】



○ (이행평가) 리콜 이행 평가의 객관성·합리성 확보를 위해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 재정립

* ① 소비자단계 조치 ② 유통단계 조치 ③ 리콜이행 및 사후관리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평가하고 제품 특성에 따라 항목별 배점 조정

3-4 위해제품의 신속한 회수체계 마련

【 불법·불량제품 현황 】

▷ 리콜조치에 의한 최근 5년간('13~'17) 회수율*은 약 49% 수준으로
위해제품 유통 방지 및 효율적 회수를 위한 체계구축 필요

□ 리콜 등 위해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한 체계 구축

○ (소비자 정보 등록제 도입)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제품을 선별하여
제품 위해·사고시 신속한 회수를 위한 소비자 정보 등록제 도입 추진

-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소비자 정보 등록서식을 제공토록 하고,
소비자 동의시 정보를 수집하여, 리콜시 이를 활용, 이행조치 실시

* 소비자 정보 등록제 도입 관련 용역사업('18) → 위해도가 높은 일부 어린이
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 등록제 시범사업('19) 실시

○ (리콜제품 반품) 지역 대형 유통업체 및 전자상거래 유통업체,
통신판매중개업체 등과 업무 협조를 통해 리콜 회수절차·규정 개선

-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을 리콜정보 제공, 교환·환불 등의 센터로 활용

*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17.6.29,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리콜행정주체 정비

○ (불량제품) 안전성조사에 따른 불량제품에 대한 리콜행정주체를
현행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

*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불량제품의 리콜 행정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인데 반해
전안법에 따른 불법·불량제품의 리콜 행정주체는 시도지사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19)

○ (불법제품) 불법제품의 경우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하므로 현행대로
'시도지사'가 리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되 '중앙행정기관'도 추가

- 제품안전관리원의 불법·불량제품 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을 중앙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품안전기본법 개정 '19)

4

(소통·역량) 제품안전관리 소통 및 역량 강화

- ◆ 제품의 순과정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역량 강화
- ◆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체계 구축
- ◆ 수요자 중심의 제품 안전문화 확산·정착

4-1 제품안전 정책역량 강화

【 제품안전 정책역량 현황 】

▷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전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부재 및 제품의 위해성평가 기능 미흡

* 서랍장 전복사고, 기저귀 및 유아용 패드 위해성 논란 등

□ 제품안전관리 전담기구인 제품안전관리원 설립(18)

- (정책연구) 국내외 안전규제기관의 안전정책 동향 파악, 시장환경 변화와 제품개발 트렌드 분석 등 제품안전관리 정책연구기능 확보
- (시장감시) 불법·불량제품 조사업무 외에 국내외 위해정보 모니터링, 리콜이행점검 등 시장감시 강화
- (기업지원) 안전인증 면제 확인, 안전확인 신고 업무 등

*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국회 산중위 계류 중

□ 제품사고 조사·분석 등을 위한 “제품위해평가센터(가칭)” 설치

- (사고조사·분석) 제품의 안전사고 발생 시 정보수집(제품안전관리원) → 사고조사 → 원인분석 → 안전관리를 신속히 추진
- (위해성 평가) 융복합 제품, 신소재·신제품 등 새롭게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굴
 - 안전관리대상 품목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안전기준 제·개정 추진

4-2 국내외 협업체계 구축

【 국내외 안전관리 협업체계 현황 】

- ▷ 부처의 기능, 전문성을 고려하여 부처별로 소관 법령에 따라 관리 품목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사각지대 존재
 - 융·복합기술로 제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개별 부처 대응 어려움
 - * 얼음정수기 사고('16.9월) : 산업부, 환경부 등이 공동대응

□ 부처 및 사업자와의 협업 강화

- (부처와 협업) 비관리제품 및 신종 위해제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범정부가 참여하는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구성·운영('17.9월)



- 주요 업무는 ①종합계획 수립·시행, ②불법·불량제품의 수입·유통 제한을 위한 부처 협력, ③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 등
- (사업자와 협업) 제조업체와의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등의 '품목군별 협의회' 운영 활성화('18)

□ 제품 생산·유통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 협업 강화('18)

- (국제기구) ISO/COPOLCO* 및 ICPHSO** 등 제품안전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융합신제품 안전기준 제개정 등 제품안전 이슈에 공동 대응
 - * COPOLCO(소비자정책위원회), ** ICPHSO(국제소비자제품안전보건기구)
- (주요국 안전당국)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내 소비자안전작업반*('08년 설립)에 참여하여 주요국 제품안전 규제당국과 국제협업 강화
 - * 참여국 :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한국 등 7개국

4-3 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반 마련

【 수요자 중심의 안전관리 현황 】

- ▷ 업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안전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정책을 발굴하는 소통의 장 운영 필요
- ▷ 소상공인의 안전규제 이행역량 제고를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제품안전정책 추진

- **(혁신포럼)** 기업, 소비자 단체, 협회, 인증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품안전혁신 포럼」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포럼으로 위상 강화(18)
 - 운영위원회(2회(6월, 11월)/연) 및 제도·분과위(수시 개최)를 운영하여 제품안전 제도와 안전기준 등에 대한 개선 방향 논의
- **(실태조사)** 적시성 있는 제품안전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및 소비자의 안전의식, 안전정보 활용도 등 제품안전 실태조사 실시(18)

□ 소상공인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원

- **(시험인프라)** 소상공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저비용으로 적기에 제품시험을 할 수 있도록 업종별 밀집지역*에 시험장비 구축 지원
 - 섬유제품 및 장신구 등에 대해 정부에서 시험장비를 구축하고, 지자체·민간에서 장소·인건비·운영비 등 부담(18 예산 17.4억원 반영)
 - * ('18) 섬유제품(경기남부, 경기북부, 부산)/장신구(부산) → ('19) 타지역 확대
- **(원부자재 관리)** 원부자재 안전을 민간 자율인증으로 관리토록 지원
 - 정부에서 자율인증제 도입을 위한 인증절차 및 기준 개발, 인증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원*, 이후 민간에서 책임 운영
 - * R&D(안전인증역량강화) 사업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예산(8억원) 활용
- **(안전교육)** 구매대행업자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교육 제공
 - * 안전제도기반조성사업(제품안전보급 확산 및 국제협력) 예산(1억원) 활용

4-4 제품 안전문화 확산·정착

【제품안전 교육 및 홍보 현황】

- ▷ 사업자 및 사용자 대상 제품안전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나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및 전문강사 등 인프라 구축 미흡
 - * ('16) 어린이안전 교재(영상) 제작(6편), 전문강사 양성(72명) 등
- ▷ 제품안전 이미지 중심의 일회성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에 치중하여 대국민 인식도 제고에 한계

□ 제품안전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안전체험관 운영 확대

- **(교육콘텐츠)** 유치원생, 초등학생, 학부모 등 대상별 다양한 안전 교육 교재 및 영세사업자를 위한 교육 앱(App) 개발·보급('19)
 - * 유아, 초등학생 등 어린이안전 교재(영상) 제작, 영세사업자를 위한 교육 앱 개발
- **(교육확대)** 어린이제품 연구학교를 선정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자(제조, 유통, 수입)를 대상 안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17~)
- **(안전체험관)** 제품안전사고예방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한 어린이제품 안전체험관을 지방 거점별로 추가 확대·운영('17~)
 - * ('17) 생활안전 체험관 2개소 운영(서울송파, 전북 임실) → ('18) 타지역으로 확대

□ 생활밀착형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실시 및 유공자 포상 확대

- **(안전홍보)** 제품안전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생활밀착형 홍보매체 (방송, 온·오프라인)*를 활용하여 대국민 제품안전 접근성 강화
 - * 지상파TV, 온라인(SNS 및 블로그), 극장광고, 공모전, 기획기사 등
- **(포상확대)** 제품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제품안전의 날” 포상규모 및 대상범위* 확대
 - * 제조업체 중심에서 유통업체, 유관기관(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으로 확대

VI

향후 추진일정

전략 1

(생산·인증)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추진 과제	세부 과제	담당부처	'17	'18	'19
1. 비관리제품 및 신제품 안전관리	① 비관리제품 및 융·복합 신제품 분류·관리	산업부			
	② 비관리제품 및 융·복합 신제품 소관부처 명확화	국조실 등 12개 부처			
	③ 비관리제품 및 융·복합 신제품 모니터링	국조실 등 12개 부처			
2. 안전관리품목 및 안전기준 정비	① 위해도 평가기법 개발	산업부			
	② 안전관리대상 품목 전면 조정				
	③ 안전기준 전면 정비				
	④ 안전기준 제개정 절차 체계화				
3. 기업의 자율 안전관리 확산	① 제품안전경영 프로그램 개발	산업부			
	②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③ 공통 안전기준을 개발·보급				
	④ 안전관리지침서 제작·배포				
4. 안전관리체계 신설 및 소프트웨어(SW) 안전	① 안전관리방법 신설 (전안법 개정)	산업부			
	② 지능형 SW 안전성 평가기준 마련				
	③ SW 인증제 도입 검토				

전략 2

(수입·유통) 수입·유통 다변화에 따른 시장감시 강화

추진 과제	세부 과제	담당부처	'17	'18	'19
1. 수입 위해제품 차단	① 수입물품 안전관리 검사 강화	관세청 등 6개 부처			
	②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정비	산업부 관세청			
	③ 수입 요건확인 절차 실효성 제고	산업부 관세청			
2. 생활밀착 수시 안전성 조사 확대	① 국민 참여형 안전성조사 공모제	산업부			
	② 안전성조사 관련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③ 정기수시 안전성조사 강화	산업부 환경부 등			
3. 불법·불량제품 시중 유통 차단	① 소비자단체 시장 감시 강화	산업부			
	②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 실시				
	③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④ 바코드 부착제 도입 용역사업	산업부			
	⑤ 바코드 부착제 시범사업	산업부			
4. 유통단계 안전 규제 합리화	① 구매대행 안전규제 합리화 (전안법 개정)	산업부			
	② 병행수입 안전규제 합리화 (전안법 개정)				

전략 3

(사용·소비)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방지

추진 과제	세부 과제	담당부처	'17	'18	'19
1. 제품위해·사고 정보체계 개선	① 국표원과 소비자원 정보시스템 연계	산업부 공정위		■	
	② 국내외 정보 수집	국조실 등 12개 부처		■	
	③ 통합 안전인증 시스템 구축 및 제품안전관리 앱(App) 개발·보급	산업부 등 관계부처			■
	④ 통합 리콜정보 시스템 구축	공정위			■
2. 제품위해·사고 조사분석체계 확립	① 제품위해사고 대응절차 마련	산업부		■	
	② 소비자 경보 발령 근거 마련			■	
	③ 제품위해사고체계 개편			■	
3. 리콜조치 및 이행점검 절차 정립	① 리콜조치 효율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산업부		■	
	② 리콜이행점검 강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4. 위해제품의 신속한 회수 체계 마련	① 소비자등록제 도입 용역사업	산업부		■	
	② 소비자등록제 시범사업				■
	③ 불량제품 리콜행정주체 정비 (전안법 등 개정)				■
	④ 불법제품 리콜행정주체 정비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

전략 4

(소통·역량) 제품안전관리 소통 및 역량 강화

추진 과제	세부 과제	담당부처	'17	'18	'19
1. 제품안전 정책 역량 강화	① 제품안전관리원 설립	산업부		■	
	② 제품위해평가센터(가칭) 설치	산업부		■	
2. 국내외 협업 체계 구축	①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구성	국조실 등 12개 부처	■		
	② '품목군별 협의회' 운영	산업부		■	
	③ 국제 협업 강화	산업부	■	■	■
3. 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반 마련	① 제품안전혁신포럼을 글로벌 포럼으로 위상 강화	산업부		■	
	② 제품안전 실태조사 실시			■	
	③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시험인프라)			■	
	④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원부자재 관리)			■	
	⑤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 (교육)			■	
4. 제품 안전문화 확산·정착	①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안전 체험관 운영 확대	산업부	■		
	② 안전관리 홍보 실시 및 유공자 포상 확대		■		